

[일련번호 : 22]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풍수해대책 비상근무자 수당 지급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동은 「풍수해 대책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 근무자 운영 수당 교부 알림」 등에 따라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자 수당을 지급·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치수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로 시달한 「풍수해 대책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근무자 운영수당 교부 알림」 공문 및 <풍수해대책 근무자 수당·대체휴무 운영요령> 에 따르면 여비(교통비 10,000원)는 평일 23시~익일 07시 및 주말·공휴일 비상소집 응소 시 응소대장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고, 발령시점 이전부터 근무(초과근무 포함)중인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.

도로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로 시달한 「제설대책 비상근무자 여비 및 급량비 교부 안내」 공문 및 <비상근무자 여비·급량비 지급계획> 에 따르면 여비는 평일 23시부터 익일 07시 사이에 비상소집에 응소한 자 및 주말과 공휴일에는 당해일 비상소집에 응소한 자에게 10,000원을 지급하되 증빙자료로 응소대장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,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여비와 급량비는 당해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.

아울러, 정상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보강근무를 한 경우 당직수당(60,000원)과 대체휴무를 지급하며, 당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동은 풍수해(제설) 대책 비상근무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면서 응소 이전부터 초과근무한 자 등 연속 근무 중인 경우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여비를 지급하였으며, 여비 지급의 필수 근거인 응소대장에 근무자의 서명이 누락되었음에도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[표1]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자 여비지급 부적정 내역

연번	성명	비상소집일시	초과근무시간	여비 지급내역	부적정 내역	비고
1		2023-01-14(토)18:00~ 2023-01-15(일)09:00 (1단계 1조)		10,000원	연속근무자 여비 지급 (10,000원 과지급)	
		2023-01-15(일) 09:00~ 2023-01-16(월) 09:00 (1단계 2조)		10,000원		
2		2024-01-06(토) 17:00~22:30		10,000원	응소대장 서명 없음	

또한 정상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보강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하였고, 2022.12.17. 제설대책 근무자(4명)에 대하여 2023년 예산으로 여비를 지급(2023.3.30.) 한 사실이 있다.

[표2] 풍수해 보강근무자 당직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 내역

연번	성명	비상소집일시 (응소대장 근거)	초과근무시간	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	비고
1		2023-06-20(화) 20:00 ~2023-06-21(수) 08:00 (응소 20:00)		238분	
2		2023-06-25(일) 22:00 ~2023-06-26(월) 09:00 (응소 20:29)		119분	

연번	성명	비상소집일시 (응소대장 근거)	초과근무시간	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	비고
3		2023-06-25(일) 22:00 ~2023-06-26(월) 09:00 (응소 22:00)		104분	
4		2023-11-05(일) 09:00~22:00 (응소 13:10)		240분	
5		2024-07-20(토) 09:30~23:00 (응소 09:00)		200분	

[표3] 비상근무자 여비 차년도 예산 부적정 지급 내역

제설 비상근무 내역	부적정 내역	비고
2022.12.17. 제설근무자	2023년 예산으로 여비 지급 (2023.3.30.)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동장은

부적정하게 지급한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자 여비 10,000원 및 풍수해 보강근무 당직수당과 중복지급한 초과근무수당 170,01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([붙임] 참조)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,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자 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

[붙임] 대상자별 초과근무수당 환수 금액 - 세부내역 별도송부